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물류터미널 운영 활성화위한 물류터미널 기능확대

건설교통부는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제도 도입을 통한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하여 추진 중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8월3일 공포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19일 입법예고하였다.

관련법령 체계를 위해 유통단지개발촉진법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제도(5년 단위), 화물유통촉진법(화물터미널, 창고)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으로 일원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을 보면, 물류터미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류터미널의 기능 확대,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 및 전기통신설비 등 간선시설의 설치범위 명확화,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토지 등의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류단지의 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마련 등이다.

▶ 법체계 일원화 및 물류터미널의 운영합리화·활성화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의 일환으로 화물유통촉진법상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 규정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화물유통촉진법 하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 규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으로 이관하여 규정하였다.

또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 대부분 주차장 및 사

무실 임대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물류터미널에 부가가치물류인 가공·조립시설(물류터미널 전체 연면적의 1/4이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철도공사·토지공사·도로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농촌공사)·지방공사·특별법인 및 민·상법인만이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해운물류를 담당하는 항만공사도 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개발 및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물류시설에 필요한 전기시설 등 간선시설의 설치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설치의무자(공급자)와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간에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설치의무자의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등 간선시설의 설치범위를 명확화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간선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완료하도록 하던 것을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검사신청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율이 10%에 달하였을 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물류단지개발 참여로 영세사업자에게 물류시



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한하여 산업단지와 같이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에 착수한 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또 물류단지 분양가격 산정시 조성원가의 구성 항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현실성이 없고 논란의 소지가 많아 택지 및 산업단지 등과 같이 조성 원가의 항목을 구체화 및 현실화하였다.

아울러,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지역여건 및 물류 시설용지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하였다.

선수금 납부자에 대한 정산규정이 없다는 이유

로 일부 사업시행자가 분양을 받은 자에게 정산금 산정시 그 이득분을 정산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 납부자와 정산하는 경우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물류단지의 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이 미흡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토지·시설 등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번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08년 2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항 컨테이너 환적화물 3개월 연속 큰폭 증가

부산항 컨테이너 환적화물이 지난 3개월간 연속해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나는 등 부산항의 화물 급증세가 계속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화물은 114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이 가운데 환적화물은 지난해 8월 대비 20.6% 증가한 52만 4,000TEU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환적화물은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6월 24.9%, 7월 26.4%) 이상 급증했고, 올 들어 8월말까지 전체적인 물동량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15%나 늘어났다. 이는 머스크와 MSC 등 글로벌 선사들이 올 들어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환적화물을 꾸준

히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출입 화물도 국내 수출입 호조에 따른 해상 물동량 증가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물동량 강세, 컨테이너세 폐지 등에 힘입어 지난달 한 달 처리량이 지난해 8월보다 13.4% 증가한 62만 2,000TEU에 달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화물은 수출입화물 489만6,000TEU, 환적화물 398만2,000TEU 등 총 888만4,000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95만4,000TEU보다 1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BPA 강부원 마케팅팀장은 "최근 부산항의 환적화물 급증세는 부산항이 그만큼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